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산직불제팀, 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통합·조정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7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원양어업 관련 사업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

제8조제13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제12조제6항제4호 중 “친환경수산물”을 “친환경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6급 또는 연구사 2명”을 “6급 또는 연구사 1명”으로, “7급 또는 연구사 3명”을 “7급 또는 연구사 4명”으로 한다.

별표 17 중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0”을 “199”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22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20”을 “2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4년 7월 31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2024년 7월 31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4년 7월 31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⑩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17>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u>20. 원양어업 관련 사업의 신고</u>	<u><삭 제></u>
<u>수리 등에 관한 업무</u>	
21. ~ 23. 삭제	
24. ~ 31. (생략)	24. ~ 31. (현행과 같음)
⑪ · ⑫ (생략)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⑥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u>	<u><삭 제></u>
<u>관리</u>	
8. ~ 18. (생략)	8. ~ 18.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9. 원양어업 관련 사업의 신고</u>
	<u>수리 등에 관한 업무</u>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u>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 관리</u>
18. (생 략)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⑭ ~ ⑰ (생 략)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 ⑤ (생 략)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친환경수산물의 인증 및 관리</u>	4. <u>친환경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u> ----- --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7급 또는 연구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 6급
또는 연구사 1명-----
----- 7급 또는 연구
사 4명-----
-----.

②·③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② -----

----- 2025년 9
월 30일-----.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
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
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
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
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
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
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
관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2025년 9월 30일-----
-----.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전략팀 및 수산직불제팀은 각각 <u>2024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 제4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u>2024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5년 9월 30일</u>-----. ② ~ 제4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5년 9월 30일</u>-----.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6
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u>2024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 <u>2026년 9월 30일</u>-----.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u>2024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③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② ----- ----- ----- ----- <u>2025년 9월 30일</u>-----.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u>2024년 7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삭 제>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
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
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
관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전략팀
및 수산직불제팀은 각각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 제4조 (생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2025년 9월 30일-----
-----.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5년
9월 30일-----.
② ~ 제4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
류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존
속한다.

②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
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
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
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5년 9월 30일-----
-----.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2026
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2026

년 9월 30일-----.

신 · 구 정원 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200</u>	• • <u>199</u>	-1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32</u>	<u>33</u>	+1
• •	• •	• •	

[별표 22]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운전 서기보 · 위생서기보 · 조리서기 보 또는 방호서기보 ·	· · <u>20</u>	· · <u>21</u>	+1
<u>열관리운영서기보</u>	· <u>1</u>	· <u><삭 제></u>	-1